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13,033,749	69,391,012
일반회계	2,077,302,341	62,319,070
특별회계	235,731,408	7,071,942
공기업특별회계	187,758,722	5,632,76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655,813	2,869,67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102,909	2,763,087
기타특별회계	47,972,686	1,439,181
주택사업특별회계	87,165	2,61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678,957	350,369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064,029	361,921
교통사업특별회계	21,438,328	643,150
대지보상특별회계	450,000	13,500
수질개선특별회계	1,474,607	44,2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5,600	2,268

제 2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6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69,493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22,0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